

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1. 16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07. 11. 19.
- 상정일 : 2007. 11. 23.(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환경사업소장 박대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하수도법」 및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의 오수·분뇨에 관한 규정이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 2006. 9. 27일 전부 개정 공포되고, 2007. 9. 28일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하수도 법령 통합에 따른 표준 하수도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 되어 「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」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임

나. 주요내용

-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(안 제2조) : 공공하수관거로부터 50미터 이내로 정함
- 중수도 설치 및 관리(안 제7조 내지 제10조)
-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·징수 (안 제14조 내지 제16조)
- 하수도사용료 (안 제14조, 별표2 및 별표3)
-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(안 제19조)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(안 제22조 및 제23조)
-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(안 제24조)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
 -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요금의 20%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근하)

< 법적검토 >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7. 10. 19일 입법예고 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고
- 또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2007. 8. 1일부터 2007. 8. 3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쳤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할 것임.

< 행정적 검토 >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하수도법」과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법률」이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이 되고, 하수도법령 통합에 따른 표준 하수도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끔 「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」와 「제천시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」를 통합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음.
- 주요 검토내용으로서
 - ▶ 제2조 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를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로 규정을 하였고,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는 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되어있어 조례안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하수처리구역의 범위가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.
 - ▶ 제5조 (하수관거의 준설 등)에는 “시장은 년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”라고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이 될 것임.
 - ▶ 제7조 내지 제10조는 최근 중수도의 활용범위확대 및 사용자 인식 변화에 따른 중수도 개념정리 와 중수도 설치신고 사항과 중수도의 관리 활용범위를 명시한 내용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음.

▶ 제14조 (공공하수도 사용료)는

- 별표2의 “하수도 사용요율표”를 검토하여보면 가정용과 산업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며
- 일반용은 업무용 3단계와 영업용 5단계를 통합하여 일반용 4단계로 조정 통합함에 따라 현행 영업용 101톤 이상 690원, 501톤 이상 780원으로 누진 부과하는 단계가 삭제됨에 따라 영업용 다량배출업소의 사용료는 하향 조정된다 할 것임.
- 대중탕용은 현행 욕탕 1종, 2종으로 구분되어 부과하던 것을 1종만 대중탕으로 명시하여 톤당 270원으로 하고, 2종은 일반용의 범위내로 포함시키는 개정사항으로 근본적인 하수도 사용 요율에는 큰 변화는 없다 할 것이며
- 또한 별표3의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는 현 상수도 업종별 구분 표와 동일한 체계로 개정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

▶ 제19조 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)는

- 「하수도법」 제61조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”란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배출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
- 2005. 4. 16일 제2005-251호로 공고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에 의거 1일 배출량 1세제곱미터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1일 10 세제곱미터 이상 배출 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개정내용이 되겠음.
- 따라서 원인자 부과대상 1일 하수 배출량이 현행 1세제곱미터에서 10세제곱미터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대폭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됨.

▶ 제20조, 제2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개별건축물, 타 공사에 대한 부분과 타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조별로 명시 하였으며

- ▶ 제23조(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)는
 - 별표7의 기준에 따라 부과·징수하는 것으로 명시 되었는바, 별표7의 부과기준이 현행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내용과 부과기준이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한 내용은 없음.
- ▶ 또한 현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된 “가축사육제한”에 대한 규정내용은 향후 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다고 판단 시, 2007. 5. 17일 제정하여 2007. 11. 18일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가 추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중수도 관리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?(김명섭 위원)
- 조례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로 부터 5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 여부와 문제점은?(김병창 위원)
- 업종구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될 경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?(김병창 위원)

나. 답변요지 <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>

- 현재 중수도는 설치 신고자가 실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내 중수도를 신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으나, 향후 중수도 부분에 대하여는 꼼꼼히 챙기겠음
- 현재 관로를 1m 매설시 10만원 정도 소요됨으로 시민의 부담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50m로 짧게 하였음
- 2006년 기준 약1,5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측하며 현실화율이 조금 부족함으로 향후 요금 조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